

- 다. 해당 업체는 보관하고 있는 품목허가(신고필)증에 재평가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관할 것.
- 라. 이미 제조·수입된 의약품으로서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(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시 새로운 제품 설명서도 가능)을 추가 첨부(부착)하여 유통할 것.
- 마.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표시기재(포장, 첨부문서 등)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공급업체(도매상, 병·의원 및 약국 등)에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이를 당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.

5. 아울러 해당 품목을 광고함에 있어 ‘의약품 재평가’ 표시,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> 분야별정보 > 의약품 > 의약품 정보 > ‘허가사항제품정보’ 란에서 확인 가능함

붙임 : 2016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 각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주무관	이원임	연구관	도원임	사무관	김혜숙	대결 2017. 8. 16. 의약품안전평가과장	전결
협조자							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4767				접수			
우 28159	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의약품안전평가과				/ www.mfds.go.kr	
전화번호 043-719-2709		팩스번호 043-719-2700		/ wonim89@korea.kr		/ 대국민 공개	